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10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의 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14~) 실시 예정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제1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2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3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5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6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7조(「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노</u> <u>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입소</u> <u>정원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u> <u>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u> <u>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u> <u>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u> <u>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u> <u>한다.</u>	<u><삭 제></u>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입소정원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0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6. (생략) 7. 제14조의2 및 별표 8에 따른 <u>행정처분의 기준: 2019년 1월 1일</u>	제15조(규제의 재검토) ----- ----- ----- ----- <u>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u> ----- -----. 1.~ 6. (현행과 같음) <u><삭 제></u>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입소정원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입소정원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		
1.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2021년 6월 30일		-----		
2.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2021년 6월 30일		-----		
3.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점검: 2021년 6월 30일		-----		
4. 5. (생략)		-----		
		<삭 제>		
		<삭 제>		
		<삭 제>		
		4. 5. (현행과 같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② <u>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 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해야 한다.</u>	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u><삭 제></u>